

거창군 맞춤형 마을만들기 지원 조례안

의안 번호	2014 ~ 93
----------	-----------

제출일자	2014. 11. 25.
제 출 자	거 창 군 수

1. 제안이유

- 주민 스스로 살기 좋은 마을을 만들어 가는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맞춤형 마을만들기와 주민의 풍요로운 삶의 질 제고와
- 마을만들기 사업의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효율적인 추진과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고 향후 정책적 수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 및 다른 법령 등과 관계(안 제1조 ~ 제5조)
- 나. 마을만들기 기본계획 수립(안 제6조)
- 다. 마을만들기 사업, 지원신청, 평가·포상(안 제7조 ~ 제9조)
- 라. 맞춤형마을만들기위원회 설치 및 기능(안 제10조 ~ 17조)
 - 마을만들기 사업의 심의·자문, 주민 전문가 등 20명 이내 구성
- 마. 마을만들기 사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한 맞춤형마을만들기 지원센터 설치·운영(안 제18조 ~ 제20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9조, 「지방재정법」 제17조
- 나. 예산조치 : 220백만원(2015년 본예산 편성)
- 다. 합 의 : 기획감사실(법무통계담당)
- 라. 기타사항
 - 1)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 2) 입법예고
 - 가) 예고기간 : 2014. 8. 28. ~ 9. 17.
 - 나) 예고결과 : 해당사항 없음
 - 3) 비용추계서 : 불임
 - 4) 성별영향분석 : 반영함

거창군 맞춤형 마을만들기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 스스로 살기 좋은 마을을 만들어 가는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맞춤형 마을만들기와 주민의 풍요로운 삶의 질 개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마을”이란 주민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면서 경제·문화·환경 등을 공유하는 공간적·사회적 범위를 말한다.
2. “주민”이란 군에 주소를 두거나, 군에 소재한 사업장 등에 근무하는 사람을 말한다.
3. “맞춤형 마을만들기”(이하 “마을만들기”라 한다)란 주민에 의하여 그들의 상황에 맞게 자발적으로 제안된 마을만들기 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스스로 능동적으로 수행하여 마을을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어 나가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4. “추진주체”란 개인, 단체, 단체 간의 네트워크, 마을 또는 공동체 조직으로서 사업을 추진하는 대상을 총칭한다.

제3조(기본이념) 마을만들기는 다음 각 호의 기본이념을 토대로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주민간 긴밀한 관계형성을 통하여 주민공동체 회복을 지향한다.
2. 주민 참여를 기반으로 주민이 주도한다.
3. 주민과 마을의 개성, 문화의 다양성을 존중한다.
4. 주민과 행정기관의 신뢰와 협력을 통해 추진한다.
5. 주민이 일하는 즐거움을 느끼고, 경제적 자립과 행복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한다.

제4조(책무) ① 군수는 주민의 마을만들기를 적극 권장하고 지원하여야 하며

마을만들기에 대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주민이 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스스로의 책임과 역할을 인식하고 적극 참여함은 물론 군과 협력하여야 한다.

③ 추진주체는 지역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일자리를 창출하고 수익사업을 확충하며 공공이익을 지역사회에 환원하는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④ 추진주체는 사업의 계획에서 종료까지 모든 과정에 주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그 목적에 따라 사업을 성실히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법령 등과 관계)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마을만들기 기본계획)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마을만들기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1. 마을만들기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마을만들기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
3. 마을만들기 민·관 협력체계 구성과 지원조직운영에 관한 사항
4. 각종 마을만들기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마을만들기에 필요한 사항

제7조(마을만들기 사업)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단일 또는 복합적으로 추진한다. 이 경우,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로컬푸드 순환기능 강화 사업
2. 문화·복지 활성화 사업
3. 귀농·귀촌 활성화 사업
4. 마을개발 활성화 사업
5. 도농교류 활성화 사업
6. 그 밖에 마을만들기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8조(지원신청 등) ① 추진주체가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군수에게 서면으로 지원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지원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지원여부와 지원금액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제9조(평가·포상) ① 군수는 매년 사업을 분석·평가하여야 하며 평가의 전문성과 향후 발전적 대안을 강구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 전문기관에 사업의 분석·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마을만들기 활성화에 기여한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10조(맞춤형마을만들기위원회 설치) 군수는 마을만들기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거창군 맞춤형마을만들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사업의 지원대상과 범위에 관한 사항
3. 사업의 분석·평가에 관한 사항
4. 맞춤형마을만들기 지원센터 지원과 운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의 위촉직 위원수가 60퍼센트를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관련 실과소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주민대표, 전문가 및 마을만들기에 대하여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마을만들기 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제12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및 해촉) ① 위원회의 심의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촉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②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관계인은 위원회에 기피신청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③ 위원은 제척·기피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

1. 제3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2. 심신장애,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3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면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면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1. 군수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제15조(관계부서의 협조)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에 관련되는 공무원과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6조(위원의 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촉직 위원과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위원회 운영세칙) 그 밖에 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18조(맞춤형마을만들기 지원센터 설치) 군수는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 하기 위하여 맞춤형마을만들기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19조(지원센터의 기능)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지원센터 사업계획 수립과 시행
2. 사업의 기초조사·분석·평가·연구
3. 사업계획 수립·실행 지원
4. 마을만들기 민간단체의 네트워크 사업
5. 마을만들기 인재 발굴·육성
6. 마을만들기 관련 교육·홍보·전파
7. 마을공동체 자원 관리
8. 그 밖에 마을만들기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20조(지원센터의 위탁) ① 군수는 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관련 단체나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 할 경우에는 재위탁할 수 있다.

③ 수탁기관은 연도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 군수는 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에는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위탁에 관한 사항은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거창군 맞춤형마을만들기 지원 조례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요약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가. 비용발생 요인 : 거창군 맞춤형 마을만들기 공모전을 통한 시범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 지원

나. 거창군 맞춤형 마을만들기 지원 조례

- 제7조(마을만들기 사업)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단일 또는 복합적으로 추진한다. 이 경우,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지원신청 등) ② 군수는 지원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지원여부와 지원금액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2. 비용추계의 결과

가. 추계의 결과

(단위 : 백만원)

구 분	1차년도 (2015년)	2차년도 (2016년)	3차년도 (2017년)	4차년도 (2017년)	5차년도 (2017년)	합계
총 비용(a - b)	220	220	220	220	220	1,100
세출	군 비	220	220	220	220	1,100
	소계(a)	220	220	220	220	1,100
세입						
	소계(b)					

3. 관련 의견

- 주민 스스로 공동체형성과 마을의 고유자원을 활용하여 살기 좋은 맞춤형 마을을 만들어 가는데 필요한 사업비를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II. 비용추계의 상세 내역

- 맞춤형 마을만들기 사업비 지원

작성자 : 농업기술센터소장 임 영 만